

---

2026학년도 창인학교

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 
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---



2026. 3.

창 인 학 교  
[환경인권부]

#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

## I 추진 근거
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교육부 고시 제2026-3호(2026.2.20.)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부칙 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학칙에 관한 특례) 고시 제8조제5호, 제12조제5항, 제18조, 제19조 및 법 제20조의5 제3항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, **한시적으로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.** 다만, 학교의 장은 2026년 8월 31일까지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여야 한다.

## II 배경 및 필요성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 일부 개정에 따른 학칙 정비 시간이 요구되어 학칙에 관한 한시적 특례 필요
-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」에서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 중 학생들을 지도해야 할 긴급성이 학칙 개정 전까지 있는 경우 별도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

## III 목적

-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 고시 제2026-3호)」 개정 사항이 학칙에 반영되기 전까지 한시적 운영 지침 마련을 통한 교육 현장의 안정적 운영

## IV 운영 방침

- 학칙에 관한 특례 운영계획 수립 후 ~ 2026. 8. 31(학칙 개정 완료 전까지)
- 학교장 내부 결재 후, 학생, 보호자, 교원 대상 공고·시행·홍보
- 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름

## 제 1 장 총 칙

제 1 조【명칭】 본 규정은 창인학교 「학생생활규정」이라 한다. 이하 본 규정이라 한다.

제 2 조【목적】 본 규정은 본교 학생 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립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즐겁고 건전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.

제 3 조【적용 근거】 본 규정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8조, 제18조, 제20조의2, 제20조의4부터 제20조의7,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9조, 제31조, 제40조의3제3항, 「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(교육부고시 제2026-3호)」, 「경기도학생인권조례」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.

제 4 조【정의】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① “학생”이란 「초·중등교육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.)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.
- ② “특수교육대상자”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
- ③ “교육활동”이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.
- ④ “학생생활지도”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(이하 “생활지도”라 한다)를 말한다.
- ⑤ “조언”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)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⑥ “상담”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.
- ⑦ “주의”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,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⑧ “훈육”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, 제지, 소지 물품 조사,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⑨ “훈계”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⑩ “보상”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·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.
- ⑪ “개별학생교육지원”이란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학교의 장과 교원의 학생 지도 행위를 말한다.

제 5 조【교육 3주체의 책무】

- ① 학생, 학교의 장과 교원, 학부모 등 보호자(이하 “보호자”라 한다)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

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.

-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,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,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.
-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,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.

## 제 2 장 생활지도의 범위

**제 6 조 【학업 및 진로】**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- 1.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
- 2.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·사용
- 3.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

**제 7 조 【보건 및 안전】**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- 1.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
- 2.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3.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

**제 8 조 【인성 및 대인관계】**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- 1.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
- 2.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
- 3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,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

**제 9 조 【그 밖의 분야】**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.

- 1.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
- 2.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
- 3. 비행 및 범죄 예방
- 4.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(이하 “스마트기기”라 한다.)의 올바른 사용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

### 제 3 장 생활지도의 방식

#### 제 10 조 【조언】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.
-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

#### 제 11 조 【상담】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,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,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,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.
-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. 다만,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④ 학교의 장과 교원,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,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.
- ⑤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.
-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.
  1. 사전에 목적, 일시,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
  2.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
  3. 근무 시간 외의 상담
-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, 협박,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.

#### 제 12 조 【주의】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.
-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주어 스마트기기 또는 물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 다만, **법제20조의5제1항 단서**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1.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
  2.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
  3.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-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,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 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3조 훈육 또는 제14조 훈계를 할 수 있다.

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·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,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.

**제 13 조 【훈육】**

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2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.

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,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.

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,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.

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**학생**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·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**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**할 수 있다.

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·보관하여 사용·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
2.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
3.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
4.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른 스마트기기 유형에 해당하는 물품
5.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**사용·소지**를 금지한 물품

⑥ 교원은 제5항에 따라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·보관하여 사용·소지를 제한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,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.

⑦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(담임교사)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 다만,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**[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]**

요건		분리기간	분리장소	분리방법
1	제12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	수업시간	교실 지정 장소	·1회차 : 주의 실시 ·2회차 :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·3회차 :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·수업 종료 후 : 즉시 되돌려줌
2	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(예시) 휴기, 라이터, 레이저빔	3일	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	·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·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보고

	기기 등			※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
3	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 될 수 없는 물품 (예시) 술, 담배 등	장소		·학부모에게 알리고,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
4	가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(예시) 도색잡지 등			※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 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

**제 14 조 【훈계】**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10조에 따른 조언, 제11조에 따른 상담, 제12조에 따른 주의, 그리고 제13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.
-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.
  1.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
  2. 성찰하는 글쓰기
  3. 훼손된 시설·물품에 대한 원상복구(청소를 포함한다)

**제 15 조 【보상】**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,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.

**제 16 조 【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】**

-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
- ② 학교의 장은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,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,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.
-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
**제 17 조 【불응시 조치】**

-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**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 지원**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, 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 **제19조**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교원은 지속적인 **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**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**제 18 조 【이의제기】**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**생활지도 및 개별학생교육지원**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-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.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.

**제 19 조【기타 사항】**

본 특례 운영계획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현행 학칙에 따른다.

**제 20 조【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,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】**

- ①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장소는 교실 내 지정 공간 또는 교실 외 지정 공간(학년연구실, 상담실, 민원면담실)으로 하되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어야 한다.
- ② 개별학생교육지원 시간은 수업 중 일시적으로 분리된 학생이 수업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필요한 최소 한도로 실시한다.
- ③ 개별학생교육지원 대상자로 일시 분리된 학생에게는 감정 조절을 위한 상담 또는 프로그램, 수업과 관련된 학습 과제 등을 제공한다.
- ④ 학교의 장은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위해 교감, 전문상담교사, 해당 시간 수업이 없는 교사 등에게 관련 업무를 분장할 수 있으며, 생활지도 봉사자 등 보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.
- ⑤ 교실 밖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절차는 수업 중 2회 이상 주의, 고성·폭언 등 소란행위 시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, 교직원 등이 학생 인솔하여 학교 내 별도 공간으로 이동, 학교의 장 또는 학교의 장이 정하는 교원이 학생에게 상담 또는 학습지원 제공, 수업 복귀를 위해 원소속 학급으로 이동 등으로 한다.
- ⑥ 수업 중 교실 외 별도 공간에서 개별학생교육지원을 실시한 경우 이를 요청한 교사(담임 또는 교과)는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일시 및 경위를 하교 시간 전까지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학교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개별학생교육지원 사실을 학생의 보호자에게 서면, 문자, 메일, 유선 등의 방법 중 하나로 알려야 한다.

**제 21 조【교내 스마트기기 사용·소지 제한】**

- ① 학생은 수업 중 및 방과후 교육활동 시간에 스마트기기를 무음 또는 비행기모드로 전환하여 개별 보관한다. 다만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0조의5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  - 1.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
  - 2. 스마트워치, 스마트글래스, 이어폰 등 웨어러블 전자기기
  - 3. 노트북, 태블릿PC, 게임기 등 문서·영상·콘텐츠의 제작·활용이 가능한 전자기기
  - 4. 그 밖에 인터넷 접속, 스트리밍, 촬영·녹음·저장·전송 기능을 가진 전자기기
 ※ 기술 발전에 따라 유사 기능을 가진 신종 기기도 대상에 포함됨
-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에 학생이 사전 허용 절차 없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 등을 주어 해당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- ③ 쉬는시간, 점심시간 중에는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허용한다.
-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, 도서관 및 자습실 등 학습 공간에서는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- 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반복되는 경우, 담임교사가 학부모(보호자)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정에서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지도하도록 안내한다.
- ⑥ 학생은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음성이나 모습을 녹음, 녹화,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⑦ 교원은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·소지 제한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

※ 이후 내용은 창인학교 학생생활규정의 현재 조항과 같거나 특례 조항에 의거 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음

## VI 기대 효과

-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의 범위와 방식에 대한 인식 제고로 자율 속에서 책임을 배우는 균형 잡힌 상호존중 기반 학생생활교육 내실화